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38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서삼석 · 박용갑 · 조계원
오세희 · 조인철 · 문금주
노종면 · 윤준병 · 이성운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인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의 물리적 낙후는 물론 산업생산량 감소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해당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감소와 취업률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용 감소 및 도심 쇠퇴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이어지며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는 중임.

특히 전남 영암군과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보은군과 충청남도 보령시 등 20년 이상 노후국가산단을 보유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국가산단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노후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임.

이에 국가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중 “기반시설”을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로서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국가는 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산업단지 <u>기반시설</u> 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① --- ----- ----- ----- <u>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u> --- ----- ----- -----.
<u><신 설></u>	②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로서 <u>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u>

② <u>제1항에</u> 따라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u>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u>----- ----- -----.
--	--